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6

제출년월일 : 2012. 06. 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2012.03.07.)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안 제5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나.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 경우
- 직제 및 정원변경(전보 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경우

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안 제5조제4항)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마. 장애인 차별 시정 (안 제10조 제1호)

-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바. 결원보충 규정 보완 (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

개정조례안 : 불입

신·구조문대비표 : 불입

관계법령발췌서 : 생략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2. 5. 10.(목) ~ 5. 30.(수) / 20일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사전심의 : 2012. 5. 30.(수)

기타 참고사항 : 불입

○ 방침결정문(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 현행 조례(전문)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안상철
	담당계장 직위·성명	인사계장 김상희
	담당자 성명·전화	김유성 (행정 3107)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신설></p> <p>②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p><신설></p>	<p>제5조 (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p> <p>③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u>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세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p><신설></p>	<p>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p>
<p><신설></p>	<p>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p>
<p><신설></p>	<p>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가,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기간 이상으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 4. (생략)</p>	<p>제10조 (직권면직) ----- ----- ----- -----</p> <p>1. <삭제></p> <p>2.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